

청소년시설환경 투고규정

.제 정 : 2002년 11월22일

.1차 개정 : 2005년 10월 8일

(‘학회지’를 ‘논문집’으로 용어개칭 : 2005.10.8)

.2차 개정 : 2007년 2월20일

.3차 개정 : 2008년 2월15일

.4차 개정 : 2008년 9월20일

.5차 개정 : 2009년 11월13일

.6차 개정 : 2011년 3월 31일

.7차 개정 : 2014년 3월 01일

.8차 개정 : 2015년 7월 31일

.9차 개정 : 2019년 3월 13일

1. 투고 자격

1) 우리학회 논문집 “청소년시설환경”에 투고하는 주저자 및 공동저자는 모두 학회 정회원이어야 한다.

(개정 : 2005.10.08) (개정 : 2007.02.20) (개정 : 2014.03.01)

2) 논문저자는 동일저자일 경우 동일호에 2편 까지 게재 할 수 있다.

(개정 : 2007.02.20.) (개정 : 2014.03.01)

2. 투고 대상

1) 본 논문집에 투고할 수 있는 원고는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시설 및 아동.청소년환경에 관련된 연구논문과 설계작품, 기타 자료로 한다. (개정 : 2005.10.08) (개정 : 2007.02.20)

2) 연구논문과 설계작품은 다른 학회지나 출판물로 발표되지 않은 미발표 논문과 설계작품을 원칙으로 하며 본 논문집 윤리규정을 따라야 한다. (개정 : 2007.02.20)

3) ‘게재보류’로 최종판정된 논문과 설계작품은 ‘게재보류’ 판정으로부터 1년 이내에 재투고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게재보류’ 판정에 대한 심사의견과 지적사항별 조치내용이 재투고 논문 및 설계작품과 같이 제출되어야 한다. (신설 : 2009.11.13)

3. 투고자의 경비부담

1) 논문의 심사료는 120,000원이며 기본 게재료는 150,000원, 연구비를 지원받는 경우의 게재료는 300,000원이다. 다음호로 심사가 이관되어 재심을 받는 경우 심사료는 70,000원이다. 단, 12페이지가 초과될 경우 쪽당 20,000원씩의 초과 게재료를 본인이 부담한다. (신설 : 2007.02.20.) (개정 : 2014.03.01) (개정 : 2015.07.31)

2) 원고의 편집은 학회에서 정한 논문작성 지침에 따라 투고자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투고자가 편집비용(페이지당 10,000원)을 지불하고 출판사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 2008.02.15) (개정 : 2015.07.31)

3) 별쇄본 10부의 제작비는 20,000원이며 본인이 부담한다. (신설 : 2007.02.20.) (개정 : 2014.03.01)

4) 칼라인쇄비용은 투고자가 실비를 부담한다.

5) 원고마감 후에 접수된 논문의 경우 투고자의 요청에 따라 급행심사를 진행 할 수 있고, 급행심사 논문 1편당 심사료는 200,000원, 게재료는 150,000원, 연구비를 지원받는 경우의 게재료는 300,000원이다.

(신설 : 2008.02.15.) (개정 : 2015.07.31)

4. 원고 제출

- 1) 본 논문집은 연4회(2월 28일, 5월 31일, 8월 31일, 11월 30일) 발행하고, 투고 원고는 수시로 접수하 되, 원고 마감은 1월 10일, 4월 10일, 7월 10일, 10월 10일로 한다. 급행심사 제도를 이용하고자 할 경 우 원고 마감은 1월25일, 4월25일, 7월25일, 10월25일로 한다. (신설 : 2007.2.20) (개정 : 2008.9.20) (개 정 : 2015.07.31)
- 2) 원고 접수는 전자우편(youth924@hanmail.net)을 통해 수시로 접수가 가능하며, 논문의 접수일은 온라 인투고심사시스템(JAMS)에서의 논문제출일로 한다. (개정 : 2005.10.8) (개정 : 2007.2.20) (개정 : 2015. 07.31)
- 3) 원고는 본 학회 논문 작성규정에 맞게 작성하여 제출해야하며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 ① 심사용 논문은 반드시 연구자명 및 소속을 삭제하고 PDF로 저장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최종 게재 확정된 논문은 HWP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 2015.07.31)
- 4) 제출한 원고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5. 원고작성

- 1) 원고의 논문제목, 연구자의 인적사항(이름, 소속, 직위)은 국문과 영문으로 표기하고 교신저자 (corresponding author)의 경우에는 소속과 직위 다음에 전자우편 주소를 기재한다. (신설 : 2007.2.20)
- 2) 연구논문의 원고는 한국어 또는 외국어로 작성한다.
- 3) 논문에는 영문 초록을 첨부해야 한다. 영문초록은 논문의 전면에 위치하며 분량은 200단어 내외를 원칙으로 한다. 영문 초록 다음에 5개 이내의 주요어(key word)를 국문과 영문으로 표기한다. (개정 : 2011.3.31)
- 4) 원고의 규정분량은 원칙적으로 발간된 논문집 12쪽 이하로 한다. (개정 : 2005.10.08) (개정 : 2007.02.20.) (개정 : 2014.03.01)
- 5) 논문과 설계작품에 포함되는 그림, 표, 사진은 직접 제판원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6. 저작권

- 1) 저작권은 논문제출시에 저작권양도확인서를 논문집 홈페이지 및 양식을 통해 작성, 동의함으로써 향후 게재되는 논문의 저작권은 학회에 귀속된다. 또한 종전에 발행된 논문집에 게재된 논문에 대해 학 회가 이미 관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2) 투고자가 논문을 본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제한을 두지 않는다. (신설: 2019.03.13.)

청소년시설환경 심사규정

.제 정 : 2002년 11월22일

.1차 개정 : 2005년 10월 8일

(‘학회지’를 ‘논문집’으로 용어개칭 : 2005.10.8)

.2차 개정 : 2007년 2월20일

.3차 개정 : 2008년 9월20일

.4차 개정 : 2009년 11월13일

.5차 개정 : 2014년 3월 1일

.6차 개정 : 2015년 7월 31일

1. 목적과 적용대상

- 1) 이 규정은 ‘청소년시설환경’에 게재하려는 연구논문과 설계작품(이하 ‘작품’이라 한다)의 심사에 관한 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이 규정에 따라 심사하여 논문집에 게재된 작품은 논문집에 게재된 연구논문과 동등한 연구실적물로 간주한다.

2. 심사위원의 선정 등

- 1) 편집위원회에서는 논문 및 작품 1편 당 3인 이상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위촉한다. 단, 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할 경우, 당해 투고논문의 심사위원 선정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 2009.11.13)
- 2) 편집위원회에서는 편집위원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 3) 소위원회에서는 투고논문과 작품의 내용을 검토한 후, 편집위원회에 다수의 심사위원 후보자를 추천한다.
- 4) 편집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에서 추천한 다수의 심사위원 후보자 가운데 다수결로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 5) 편집위원회에서는 1편 당 제 1.2.3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그 심사결과로 게재여부를 판정한다. (개정 : 2008.9.20)

3. 심사위원의 자격과 선정기준

- 1) 심사위원은 회원과 비회원이 포함된다.
- 2) 심사위원의 선정은 전공, 강의와 연구분야, 연구업적, 지명도, 재직기관, 출신학교, 활동지역, 심사의 성실성 등을 두루 고려하여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한다.

4. 심사방법 및 절차

- 1) 투고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1차심사를 실시한다. 심사결과는 ①심사가, ②심사불가중 하나로 판정한다. (신설 : 2015.07.31)
- 2) 1차심사결과가 심사가인 경우, 투고자는 심사대상논문을 JAMS에 온라인등록하며, 해당 심사위원은 논문심사를 진행한다. (신설 : 2015.07.31)
- 3) 심사위원과 투고자의 성명과 소속을 누구에게나 익명으로 하여 심사한다.
- 4) 논문내용은 편집위원회에서 마련한 심사서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작품내용은 설계작품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 5) 심사위원은 심사결과를 ①게재가 ②수정 후 게재가 ③수정 후 재심 ④게재불가 중 하나로 평가하며,

최종평가가 '수정 후 재심'일 경우 2차 심사를 실시하며, 이 경우 심사결과는 ①게재가 ②수정 후 게재가 ③수정 후 재심 중 하나로 평가한다. 단, 2차에서 '수정 후 재심'이 나온 경우 다음 호에서 재심사를 실시한다.

최종평가가 '수정 후 게재'일 경우에도 답변서를 받아 심사위원에게 수정 부분을 확인 받도록 한다.

(개정 : 2007.2.20.) (개정 : 2014.03.01.)

5. 게재여부 판정

1) 논문집에 게재되는 논문 또는 설계작품은 '게재가' 판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 2005.10.8) (개정 : 2009.11.13) (개정 : 2015.07.31)

2) 심사에서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동일 평가일 경우 이를 최종판정으로 한다.

(신설 : 2007.2.20) (개정 : 2009.11.13)

3) 최종판정이 '게재가'일 경우 논문 또는 설계작품은 투고일부터 1년 이내에 게재되어야 한다. (신설 : 2009.11.13) (개정 : 2015.07.31)

4) 1차 심사 또는 2차 심사에서 '게재가'와 '게재불가'가 각기 1인일 경우 제 3 심사위원에 의해 최종결과를 결정한다. (신설 : 2014.03.01)

5) 기타 3인의 심사결과가 각기 다른 경우 구체적인 게재여부 판정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 2005.10.8) (개정 : 2007.2.20) (개정 : 2009.11.13)

6. 이의신청과 최종판정

1) 투고자는 투고내용과 심사결과에 대하여 편집위원회의 중개를 통하여 익명으로 심사위원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2) 투고자는 심사결과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회는 이에 대한 최종판정을 내릴 권한을 가진다. 편집위원회의 최종판정에 대하여 투고자와 심사위원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별표 1> 심사위원 3인의 평가가 각기 다른 경우의 게재여부 판정기준표

(개정 : 2007.2.20) (개정 : 2009.11.13)

제 1 심사위원	제 2 심사위원	제 3 심사위원	최종판정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

청소년시설환경 설계작품 평가규정

.제 정 : 2002년 11월22일

.1차 개정 : 2003년 9월16일

.2차 개정 : 2005년 10월 8일

(‘학회지’를 ‘논문집’으로 용어개칭 : 2005.10.8)

.3차 개정 : 2007년 2월20일

1. 목적

본 평가규정은 청소년시설환경에 투고된 설계작품에 대한 작품의 공정한 평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작품의 평가규정

설계작품은 작품의 내용과 표현, 완성도 및 기여도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그 요건은 <별표 2> 설계작품 평가기준표와 같다.

3. 투고대상작품

본 논문집에 투고하는 설계작품은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규정한 청소년시설에 관련된 작품으로 한정한다. (개정 : 2003.9.16) (개정 : 2007.2.20)

4. 심사

투고한 모든 설계작품은 원칙적으로 심사의 대상이 된다. 다만 각종 기관이나 단체가 수여한 수상작품은 시공여부에 관계없이 본 규정에 의한 평가에서 통과된 것으로 간주하며, 그 기관과 수상작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수상기관 :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혹은 기타의 단체로 한다.
- 2) 수상작품 : 수상작품은 수상기관이 시행한 각종 설계작품의 현상설계 및 작품평가에서 수상한 작품으로 한다. 단, 심사위원 자질의 우수성, 작품의 우수성, 수상의 경쟁성, 심사의 공정성 등이 확보될 수 없는 기관이나 단체가 수여한 수상작품은 심사를 받아야 한다.
- 3) 수상작품의 범위 : 수상작품은 다음의 각 호에 한한다.
 - ① 특상, 당선작, 우수작,佳作 혹은 대상, 1등, 2등, 3등 혹은 금상, 은상, 동상의 작품
 - ② 수상작품이 1점만 선정되었을 경우는 상기 ①항의 수상작품 범위에 속하는 작품

5. 수상작품 투고자의 의무 (개정 : 2003.9.16)

각종 설계작품의 현상공모 및 작품평가에서 수상한 작품을 투고한 사람은 수상사실을 증명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별표 2> 설계작품 평가기준표
(개정 : 2003.9.16)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요건
주 제	타 당 성	.적합성 : 청소년시설과 관련된 주제를 담은 작품(필수요건) .시의성 : 시급한 현상의 개선이 필요하거나 새로운 개념의 제안을 담고 있는 작품
	가 치 성	.참신성 : 주제가 참신하고 새로운 개념을 제안하는 작품 .독창성 : 독창적인 설계개념을 담고 있는 작품
내 용	설계과정	.접근방법의 타당성과 설계과정의 합리성
	유 용 성	.설계내용과 활동프로그램의 기능적 유용성
	공 익 성	.건전한 청소년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조형성과 양식
	친환경성	.주변 환경과의 조화 및 심미성
완성도	표 현 력	.표현의 독창성과 내용의 명료성 .작품 목적과의 부합성 및 표현의 설득력 .공인된 표현기법의 채택(제도의 총칙 등) .표현의 아름다움과 의미전달의 가독성
	기 술 적 가 능 성	.설계 후 시공이 완료된 작품(혹은 구조와 재료, 기술력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시공 이 가능한 작품)
기 여 도		.청소년시설의 연구 및 분야발전에 기여도

청소년시설환경 논문 작성규정

.제 정 : 2005년 10월 08일
.1차 개정 : 2007년 02월 20일
(전문재구성 : 2007년 02월 20일)
.2차 개정 : 2008년 09월 20일
.3차 개정 : 2011년 03월 31일
.4차 개정 : 2013년 08월 31일

1. 원고의 구성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함을 표준으로 한다.

- 논문제목
- 저자
- 영문초록
- 본문
- 참고문헌

2. 원고 작성 방법

1) 논문제목(국문, 영문)

- ① 국문제목은 맨 윗줄 중앙에 넣는다. (부제목이 있는 경우, 국문 주제목의 하단 중앙에 넣는다)
- ② 영문제목은 국문제목 하단 중앙에 넣는다. (부제목이 있는 경우, 영문 주제목의 하단 중앙에 넣는다)
- ③ 본 투고지침이외의 사항은 본 학회에서 제시한 견본 및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2) 저자(국문, 영문)

- ① 국문성명은 영문제목 다음 2행을 띄우고 우측에 넣는다.
- ② 영문성명은 국문성명 하단에 다음 예와 같이 넣는다.

예) 홍길동

Hong, Kil-Dong

- ③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주저자(책임연구자), 공동저자순으로 표기하며, 공동저자는 기여도에 따라 순서대로 표기한다. 교신저자는 맨 뒤에 표기한다.

투고자 3인까지는 각 한 줄씩 병기한다. 그 이상인 경우 3인씩 줄을 바꿔 병기하되 4인인 경우만 2인씩 두 줄로 병기한다. (개정 : 2008.9.20)

예) 홍길동 Hong, Kil-Dong / 김길동 Kim, Kil-Dong

- ④ 소속 각주 표기는 성명 끝자 우측에 윗첨자 '*' 표시로 한다.

소속은 첫 쪽 왼쪽 하단에 각주 형태로 아래의 예와 같이 기입한다.

예) * ○○대 건축학과 교수

** ○○대 건축학과 대학원 박사과정

교신저자일 경우에는 전자우편 주소를 소속 다음에 기입한다.

예) * ○○대 건축학과 교수 (교신저자: 전자우편주소)

- ⑤ 연구비 지원 등 논문에 대한 기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저자의 소속 하단에 설명을 덧붙인다.

3) 영문초록

영문초록은 성명(국문, 영문) 다음 2행을 띄우고 12줄 내외로 기입한다.

주요어(Keyword)는 영문초록 하단에 5단어 내외로 기입하며, 국문(주요어)의 다음 행에 영문(Keyword)을 표기한다.

예) 주요어: 청소년, 청소년시설...

Keyword: youth, youth facility...

4) 본문

① 본문의 각 장, 절, 항은 다음과 같이 표기하며 들여쓰기 및 내어쓰기를 하지 않는다.

예) 장 : I

절 : 1.

항 : 1.1

이하 : 1) -> (1) -> ①

② 본문구성은 장 제목 위, 아래 각각 1행씩을 띄우고, 절 제목은 위만 1행을 띄고, 항 타이틀은 행을 띄우지 않는다.

③ 인명, 지명 등 고유명사는 국문표기와 함께 원문자를 사용하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 도량형은 미터법을 원칙으로 한다.

④ 표와 그림

- 표와 그림은 1단 또는 2단의 가로 폭에 맞도록 편집한다.

- 표와 그림의 일련번호와 제목(캡션)은 표와 그림의 상단 중앙에 기재한다.

예) <표 5>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빈도

- 문장 중에 들어가는 표와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문장과 연결되는 경우에는 괄호없이 사용하고 문장과 연결 되지 않는 경우에는 < >괄호를 사용한다.

예) 표 1과 그림 2는 청소년시설의 발전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청소년시설의 발전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표 1 참조>

- 표와 그림의 주기는 표와 그림의 하단 좌측에 기재한다.

- 표와 그림의 출처는 표와 그림의 하단 좌측에 인용문헌 표기와 동일하게 기재한다.

- 표의 모양은 가장 윗선과 아랫선은 0.3mm 나머지 선은 0.12mm, 표의 왼쪽과 오른쪽 선은 없앤다.

- 그림은 원본에 삽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 여러 그림이 하나의 제목으로 묶일 경우, 각 그림마다 a), b), c)등의 기호를 넣고 소제목을 붙인다.

- 사진은 그림으로 표기한다.

⑤ 주

- 설명이 요구되는 부분에는 그 부분 최종자 우측 상부에 주의 일련번호를 반괄호 속에 넣어 기재하고 그 쪽 하부에 그 주의 번호 및 설명을 넣는다.

예)청소년수련시설중 최초의 예²¹⁾는.....

- 논문의 장, 절 항을 포함한 제목에는 주를 달 수 없다. 이 경우, 본문에서 해당하는 내용을 처음 기술할 때 주를 달아 설명한다.

5) 본문내용은 맑은고딕체를 사용하여 기술하며, 글자의 크기는 편집세부사항을 따른다.

3. 인용 문헌의 표기 방법

1) 인용하거나 참고한 경우는 해당 문장의 바로 뒤 괄호 안에 출전을 명기한다. 단 원전을 그대로 인용한 경우는 인용문구의 앞뒤에 " " 표기를 추가한다. 출전은 기본적으로 저자와 출판연도 순으로 표기하되 문헌의 저자와 출판연도, 페이지 사이에 각각 쉼표(,)와 콜론(:)을 사용한다. 또한 영문이름은 성만 표기한다. 세부 표기형식은 다음과 같다.

2) 인용하는 저서나 저자명이 본문에 나타나는 경우에는 괄호 속에 출판연도를 표시한다.

예) 홍길동(2004)은..., 이몽룡(2004)은...

3) 인용하는 저서나 저자명이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인용문장의 끝에 괄호와 함께 저자명, 출판연도를 표시하며, 다수인 경우 인용문헌 사이에 세미콜론(;)을 사용한다.

예) 인용문헌이 1개인 경우: ... 해당된다(홍길동, 2004)

인용문헌이 2개이상인 경우: ... 해당된다(홍길동, 2004; 이몽룡, 2001)

4) 저자가 다수인 경우

① 저자가 2인인 이상인 경우 : 처음 인용될 경우에는 모두 기재하며, 두 번째부터는 첫 저자만 나타낸다.

예) 국내저자인 경우

첫 번째 인용 시: 홍길동, 이몽룡, 이도령(2006)은...

두 번째 인용 시: 홍길동 외(2006)는...

국외저자인 경우

첫 번째 인용 시: Greenberger, Steinberg, and Vaux(1981)

두 번째 인용 시: Greenberger et al.(1981)

5) 규정에 없거나 세부사항은 일반 예에 따르되 인용문의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한다.

4. 참고문헌의 작성

1) 참고문헌은 국내문헌, 동양문헌, 구미문헌, 인터넷 사이트의 순서로 작성하며, 국내 및 동양문헌은 가나다순으로, 구미문헌은 알파벳순으로 배열한다.

2) 국내문헌의 경우, 성과 이름을 적고 이어서 ()안에 출판연도를 적는다.

외국문헌의 경우, 연구자의 성을 적고 심표를 한 다음 이름은 약자만 대문자로 적고 마침표를 한 다음 한 칸 띄고 ()안에 출판연도를 적는다.

3) 국내문헌에서 하나의 참고문헌이 두 줄 이상인 경우, 두 번째 줄부터는 한글 두 자리를 띄고 셋째 자리부터 시작한다.

외국문헌에서는 하나의 참고문헌이 두 줄 이상인 경우, 둘째 줄부터는 알파벳 네 자를 띄고 다섯째 자리부터 시작한다.

4) 실 예

① 단행본

정옥분 (1998). 청년발달의 이해. 서울: 학지사.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② 학회지 게재논문

정성훈, 신유진 (2006). 장수천을 활용한 인천 청소년전용공간 조성사업을 위한 계획 연구. 청소년시설환경, 4(3), 3-14.

Baker, R. W. & Siryk, B. (1984). Measuring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 179-189.

③ 보고서

김기태 (2000). 인터넷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및 대안연구: 인터넷 미디어 교육시안 제시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보고서.

④ 학위논문

이지영 (2004). 진로미결정의 선행 변인과 결과 변인으로서의 직업탐색행동 및 구직성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Baik, J. S. (1997). Individuation, college adjustment and ego identi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⑤ 학술대회 발표논문

신미선 (2006). 청소년과 문화콘텐츠.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2006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50-53.

⑥ 번역서

Muuss, R. E. (1999). 청소년학. 권율(역). 서울: 보문당. (원본발간일, 1968).

⑦ 인터넷 자료

http://www.nca.or.kr/main/nca_main.htm

5. 편집세부사항

용지설정	용지방향	제책	여백 주기 (mm)						
			위쪽	아래쪽	왼쪽	오른쪽	머리말	꼬리말	제본
A4 [210 × 297 mm]	좁게	한쪽	20	15	20	20	8	15	0

2) 단수(본문)

자주 쓰이는 모양	단 종류	단 개수	단구분선	너비 및 간격		단방향	단 너비 동일 하게	적용범위
				너비	간격			
둘	일반단	2	×	81 mm	8 mm	왼쪽부터	○	문서전체

3) 도입부분(제목, 성명, 영문초록, 주요어) 글상자

줄수	칸수	너비(W)	높이(H)	바깥여백				테두리	모든 셀의 안여백			
				위쪽	오른쪽	위쪽	아래		위쪽	오른쪽	위쪽	아래
1	1	170.0 mm	자동	0	0	5	5	선없음	0.50	0.50	0.50	0.50

4) 글자모양과 문단모양(개정 : 2013.8.31)

		글자모양				문단모양							
		글꼴	장평 (%)	자간 (%)	크기 (P)	왼쪽 여백	오른쪽 여백	들여 쓰기	줄간격 (%)	문단 위	문단 아래	날말 간격	정렬방식
도입부분	국문제목	맑은고딕	100	0	16	0	0	0	150	0	0	0	가운데
	국문소제목	맑은고딕	100	0	12	0	0	0	150	0	0	0	가운데
	영문제목	맑은고딕	100	0	12	0	0	0	150	0	0	0	가운데
	영문소제목	맑은고딕	100	0	10	0	0	0	150	0	0	0	가운데
	국문이름	맑은고딕	100	0	10	0	0	0	150	0	0	0	오른쪽
	영문이름	맑은고딕	100	0	9	0	0	0	150	0	0	0	오른쪽
	영문초록	맑은고딕	100	0	9	0	0	0	150	0	0	0	혼합
	키워드	맑은고딕	100	0	9	0	0	0	150	0	0	0	혼합
본문	장 제목	맑은고딕	100	0	10	0	0	0	150	0	0	0	왼쪽
	절 제목	맑은고딕	100	0	9	0	0	0	150	0	0	0	왼쪽
	항 제목	맑은고딕	100	0	9	0	0	0	150	0	0	0	왼쪽
	본문	맑은고딕	100	0	9	0	0	10	150	0	0	0	혼합
	표, 그림제목	맑은고딕	100	0	8	0	0	0	150	0	0	0	가운데
	표, 그림내용	맑은고딕	100	0	8	0	0	0	150	0	0	0	혼합
	참고문헌타이틀	맑은고딕	100	0	9	0	0	0	150	0	0	0	가운데
	참고문헌본문	맑은고딕	100	0	9	0	0	*	150	0	0	0	혼합
	수식	맑은고딕	100	0	9	0	0	0	150	0	0	0	혼합
각주	맑은고딕	100	0	9	0	0	**	130	0	0	0	혼합	

* : 참고문헌은 내어쓰기 18임

** : 각주는 내어쓰기 13임

청소년시설환경 편집규정

제 정 : 2007년 02월 20일

1차 개정 : 2015년 07월 31일

1. 목적

- 1) 이 규정은 '청소년시설환경'에 게재하려는 연구논문과 설계작품의 편집업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편집위원 선정 기준

편집위원의 자격은 본 학회 정회원으로써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정한다.

- 1) 해당분야(청소년, 건축, 도시, 설계, 디자인, 조경 등) 박사학위 소지자
- 2) 해당분야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
- 3) 해당분야 10편 이상 논문 또는 작품 실적 소지자

3. 편집위원회 구성 및 임기

- 1)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청소년 분야와 시설관련 분야에서 10인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 2) 편집위원은 본 학회의 편집위원 선정 기준에 합당한 사람 중 관련 분야에서 연구업적 및 대외활동이 뛰어난 사람으로 선정한다.
- 3) 편집위원장은 본 학회의 편집위원 선정 기준에 합당한 자로서 이사 중에서 선출하고, 편집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한다.
- 4) 선정된 편집위원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 5)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각각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편집위원회의 임무

편집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논문집 투고규정 및 제반규정 심의
- 2) 심사위원단 구성
- 3) 심사위원 선정
- 4) 논문 게재 여부 결정
- 5) 논문집 편집과 출판에 관련된 사항
- 6) 기타 논문집 발전에 관련된 사항

5. 편집위원회의 운영

- 1) 편집위원회는 논문 접수마감 후 10일 이내에 정기적으로 편집위원회를 개최하여 논문심사를 진행한다.
- 2) 특별한 안건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6. 시행일시

- 1) 본 규정은 201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청소년시설환경 윤리규정

제 정 : 2007년 02월 20일

1차 개정 : 2013년 08월 31일

2차 개정 : 2015년 07월 31일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이하 본 학회)의 논문집 및 학회지에 투고, 게재되는 논문과 본 학회에서 수행되는 연구결과물에 대한 부정행위의 기준, 징계 등의 제반 사항을 정함으로써 본 학회의 연구윤리 및 진실성을 정립하고, 윤리규정 준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 2015.07.31)

제2조 [적용대상 및 범위]

- ① 이 규정은 본 학회 회원 및 본 학회가 주관하는 연구와 학술활동(학술지 발행, 학술대회 개최, 연구보고서 발간, 심포지엄 개최 등)에 참여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 ②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개정 : 2015.07.31)

제3조 [연구부정행위의 규정]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를 수행 및 발표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내용을 위조, 변조, 표절, 중복게재,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 연구의 진실성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 2015.07.31.)

제4조 [용어와 정의]

- ①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 ② "변조"라 함은 연구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③ "표절"이라 함은 고의적으로 국·내외 학술지, 학술대회 발표논문, 연구보고서, 석·박사학위논문, 서적, 잡지, 인터넷 등 모든 문자화된 매체를 통해 이미 발표된 학문적 아이디어, 견해, 표현, 연구결과 등의 내용을 출처표기 없이 기술하는 행위를 말한다. 표절은 연구자가 이미 발표한 논문의 경우(자기 표절)에도 적용된다.
- ④ "중복게재"라 함은 연구자 본인의 동일한 연구결과를 인용 표시 없이 동일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게재하는 경우 또는 연구데이터가 같고 대부분의 문장이 같은 경우를 말한다.
- ⑤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라 함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 2015.07.31.)

제5조 [윤리규정 서약]

본 학회 회원은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하여야 한다. 기존 회원은 윤리규정 발효시 윤리규정

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 2015.07.31)

제6조 [윤리규정의 수정]

윤리규정의 수정 절차는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윤리규정이 수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 2015.07.31.)

제2장 투고자의 윤리규정

제7조 [인용 및 참고 표시]

- ①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 ② 논문이나 연구계획서의 평가 시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 ③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후주)를 통해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선행연구의 결과부분과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주장·해석부분을 독자가 알 수 있도록 분리하여 명기하여야 한다. (신설 : 2015.07.31)

제8조 [표절]

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을 자신의 연구 결과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 저술 등에 제시해서는 안 된다. 타인의 연구 결과는 출처를 명시함과 더불어 여러 차례 참조할 수는 있지만,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나 주장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이 된다. (개정 : 2015.07.31)

제9조 [출판 업적]

- ①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 ② 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역자) 및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어떤 직책에 있다고 해서 저자가 되거나 제1저자로서의 업적을 인정받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반면, 연구나 저술(번역)에 기여했음에도 공동저자(역자)나 공동연구자로 기록되지 않는 것 또한 정당화될 수 없다. 연구나 저술(번역)에 대한 작은 기여는 각주, 서문, 사의 등에서 적절하게 고마움을 표시한다. (신설 : 2015.07.31.)

제10조 [연구물의 중복 게재 혹은 이중 출판]

- ①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투고하거나 출판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
- ② 한국연구재단(구,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지나 등재후보지가 아닌 일반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학술대회 발표논문, 박사 또는 석사학위논문, 연구 보고서 등을 수정·보완하여 본 학회의 논문집에 투고,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명기해야 한다.
- ③ 이미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물을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판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편집자에게 이전 발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 2015.07.31)

제11조 [기존 논문의 비판적 인용에 관한 주의]

저자가 기존 논문에 대해서 학문적 근거에 의해 비판적으로 인용 또는 기술하는 것은 허용되나,

비방 및 근거 없는 비판을 하여서는 안 된다. (신설 : 2015.07.31)

제12조 [조사대상자, 피험자의 인권 등의 보호]

저자는 논문을 위한 연구에 있어서 피조사자의 인권 등을 침해하여서는 안 되며, 또한 실험 등에 있어서도 피험자의 생명, 건강, 프라이버시 및 존엄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신설 : 2015.07.31)

제13조 [상업적 의도 등의 배제]

모든 논문은 상업적 의도 또는 정치적, 종교적 의도로 작성되어서는 안 된다. (신설 : 2015.07.31.)

제14조 [평가에 대한 대응 및 수정]

저자는 논문의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서 편집위원(회)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 2015.07.31)

제15조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의 책임]

논문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그 모든 책임은 저자에게 있으며, 본 학회는 이것에 관하여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신설 : 2015.07.31)

제3장 편집위원의 윤리규정

제16조 [공정한 운영]

- ①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 ②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심사 의뢰 시에는 저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노력한다. 단,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 해당 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③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신설 : 2015.07.31)

제4장 심사위원의 윤리규정

제17조 [역할자각]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책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제18조 [심사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심도 있게 숙독하지 않은 채 평가하여서는 안 된다.

제19조 [저자에의 배려]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제20조 [비밀엄수의 의무]

- ①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다른 사람과 논의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안 된다.
- ②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를 받은 사실, 또는 심사 중인 논문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21조 [논문편집위원회 등에의 보고 의무]

심사위원은 논문의 내용이 이미 발간되어진 논문과 동일하다는 것을 발견하거나, 동일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논문편집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심사위원은 해당 논문 중에 위조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신속히 논문편집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연구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22조 [역할]

- ① 연구윤리 확립에 관한 사항
- ② 연구부정행위의 예방, 조사에 관한 사항
- ③ 제보자 보호,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 ④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 ⑤ 연구진실성 검증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 ⑥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3조 [구성]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논문편집위원회에 두며 위원 6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논문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위원장은 호선으로 정한다. 단, 심의 안건의 대상이 되는 논문의 저자 및 연구책임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제24조 [회의]

-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원장은 위원회 성립에 있어 출석은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 ③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조사대상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해당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제25조 [권한과 책무]

- ① 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부정행위 존재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증거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간주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의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인멸,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⑤ 위원회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⑥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회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26조 [예비조사]

- ① 예비조사는 심의요청한 내용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 ② 위원장은 본 학회 회장과 협의하여 예비조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 ③ 예비조사위원은 위원회에서 선임하되 대학 교원 이상 회원으로 하고, 예비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예비조사위원회에서 호선한다.
- ④ 예비조사는 심의요청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 ⑤ 예비조사는 심의요청 내용이 제3조에서 정의한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한다.
- ⑥ 예비조사 결과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문서로 통보되어야 한다. 단,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 ⑦ 제보자와 조사대상자는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27조 [본조사]

- ① 본조사는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 ② 위원회는 예비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본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하며,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할 수 있는 조사기간은 1회에 걸쳐 30일을 넘지 않는다.
- ③ 위원장은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하며, 본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본조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본조사위원회는 제보자, 조사대상자,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해야 한다.

제28조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 대한 권리보호 및 비밀엄수]

-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 ②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참여한 자는 조사와 직무수행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부당하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29조 [소명기회의 보장]

- ①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반론의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 ②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에게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0조 [판정]

- ① 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반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과 절차를 확정한다.
- ② 위원회는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피조사자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판정을 한다.

제31조 [승인]

위원회는 예비조사위원회 및 본조사위원회의 결과보고서를 승인하고, 그 결과를 결과보고서 접수 후 20일 이내에 예비조사위원회 및 본조사위원회위원회에 통보한다.

제32조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연구부정행위 확정판정이 있는 경우, 확정판정 내용을 학회 홈페이지 및 익월 논문집에 게시하며 다음 각 호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 ① 부정논문의 게재취소
- ② 경고
- ③ 회원자격 정지 또는 박탈
- ④ 기타 적절한 조치

제33조 [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없이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통지한다.

제34조 [명예회복 등 후속조치]

조사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조사자 혹은 혐의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칙

제35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